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중상,복합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 962-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15개동, 총 2,807세대 중 일반공급 1,371세대, 특별공급 1,436세대
[특별공급 1,436세대(기관추천 206세대, 다자녀가구 280세대, 신혼부부 475세대, 노부모부양 84세대, 생애최초 39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아파트 4,825대 및 오피스텔 1,551대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01대(※ 용도별 주차 계획 및 주차대수는 추후 설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기** : 2030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괄호 안은 예비자 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28A	128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3(65)	13(65)	0	0	26(130)
		서울특별시	13(65)	13(65)	0	0	26(130)
		인천광역시	13(65)	13(65)	0	0	26(130)
	철거주택		13(65)	13(65)	0	0	26(130)
	국가유공자		13(65)	13(65)	0	0	26(130)
	장기복무제대군인		13(65)	13(65)	0	0	26(130)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13(65)	13(65)	0	0	26(130)
	중소기업 근로자		12(60)	12(60)	0	0	24(120)
	합 계		103(515)	103(515)	0	0	206(1,03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6.04.09.(목)	2026.04.20.(월)	2026.04.28.(화)	2026.04.30.(목)~05.07.(목)	2026.05.10.(일)~05.13.(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etre-oj.co.kr 청약홈 :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견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1번지)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정 대상자는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필히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분양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p>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p> <p>모두 부적격 처리</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통장 자격요건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 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3-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철거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지역별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가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추천자는 주택형별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 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수 한정)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etre-oj.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9-1번지

☐ 분양문의 : ☎ 1688-7002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